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3년 9 월 19 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장인

여수시 조례 제1962호

붙임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62호

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 란 흙길, 자갈길, 모랫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길” 이란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친환경 길을 말한다.
3. “보행길” 이란 도시공원 및 산책로, 둥산로 등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.
4. “도시공원” 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친환경 보행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규모와 기준,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맨발걷기길 조성 등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2.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3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4.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

제6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걷기길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보수
3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4.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·치료 체험사례의 발굴·조사
5.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
6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포상)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